

수 입 식 품 관 리 침

1. 목 적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등의 수입검사업무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표준화하여 검사업무의 신속성·공정성 그리고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내 용

가. 총 팔

- (1) 식품등의 수입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다른 수입추천 또는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서 정한 바에 의거 운용된다.
- (2) 식품등의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당해식품의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방법, 포장상태, 용도등을 참고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및 식품공전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건강보조식품, 다류등 업종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 (3) 수입식품의 위생과 안전성검사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수입신고

-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6] 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으로서 수입후 판매하거나 유통할 대상이 아닌 것.

(2) 신고서류

(가) 구비서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 수입신고서 2부(별지 제4호서식)

○ 수입허가증사본 또는 수입승인서 사본

○ 내용명세서(송장)사본

○ 선적서 사본

○ 식품판매업신고증 사본(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 함)

○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자가 기준 및 규격대상품목에 한 함)

○ 품목제조허가증 사본(자가소비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제품명세서(주요원료 및 화학적합성 품의 명칭과 제품의 용도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용의 식품등 원자재는 제외함)

(나) 구비서류정구시 유의사항

① 수입신고서 기재 구체화 : 동일제품을 추후 수입하고 이화학적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입신고서에 성분배합 비율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② 자가기준, 품목제조허가증 그리고

제품명세서가 면제되는 자연식품의 범위 : 다른 물질이 첨가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고 채취된 그대로 또는 단순히 건조·냉동한 것으로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한 것까지 포함된다.

(3) 제품명세서의 활용

- 신속한 검사와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있어서 수입자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되도록이면 제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도록 하고 이를 서명 확인하게 한다(별지 제품명세서 서식을 이용할 것)
- 식품중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살균제, 발색제등을 사용하였거나 방사선조사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유도한다.
- 외국인용 식품이라도 대량구매하는 가공식품이나 문제예상식품은 제품명세서를 제출토록 한다.

(4) 기타 관련서류의 정구

- ① 필요한 경우 외국인용 식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
- ② 수입자가 스스로 필요한 식품위생검사를 행한 경우 수출국 또는 국내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다. 검사의 종류별 처리방법과 유의사항

(1) 서류검사

- 징구한 서류들로서 식품위생상 위해여부를 판단처리하며 그 대상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6] 3. 검사요령중 서류검사 대상을 참조 한다.

(2) 관능검사

- 서류검사후 서류상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이물질함유나 부패, 변질여부, 포장상태와 표시사항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6] 3. 검사요령중 관능검사 대상을 참조한다.

○ 다음은 서류검사로서만 검사를 행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예상될 때에는 관능검사를 행한다.

- ① 최초 수입되는 조원료 또는 자가소비용 원료
- ②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재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 ③ 조원료 또는 자가소비용원료로서 해당 완제품이 성분규격등의 부적으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 ④ 천연향료, 천연향료등이 혼합된 착향료 그리고 첨가물공전상 사용기준만 정하여진 착향료등 세 가지 이외의 향료

(3) 이화학적 및 세균학적검사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6] 3. 검사요령중 이화학적 또는 세균학적 검사대상을 참조한다.
- 다음은 관능검사로서 검사를 마칠 대상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예상될 때에는 이화학적 또는 세균학적 검사를 행한다.
 - ① 최초 수입되는 농축수산물과 조원료 그리고 자가소비용원료
 - ② 식품첨가물 공전에 규격 및 시험기준이 정하여진 향료
 - ③ 기수입되어 수입검사 또는 유통중 검사시 문제가 된 식품 등
 - ④ 수출국 또는 다른 수입국에서 유해물질 오염등의 문제가 제기된 식품
 - ⑤ 수송중 위생상 안전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식품
 - ⑥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화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4) 검사처리방법과 유의사항

- ① 식품공전과 첨가물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과 기준에 의거 검사를 행하되 공전에 수재되어있지 아니한 품목은 자가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 ② 식품공전에 수록된 제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에는 자가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여 검사할 수 없으며 한번 제출된 자가규격을 다시 변경하여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이미 자가규격이 인정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타인이 인정받은 자가규격을 사용하여 검사받을 수 있다.
- ④ 자연농축수산물이나 조원료등에 대한 검사는 식품공전에 허용기준이 정하여진 범위내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⑤ 검체의 수거는 식품공전상의 검체 수거요령에 의하도록 하되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포장단위 3곳이상에서 분할 수 거하여야 한다.
- ⑥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가 검사 및 수거 기관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재검사 할 수 없다.

(5) 국내외 검사기관의 사전 검사결과의 인정

수입자가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검사결과를 수입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이를 이화학적검사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사전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검사기관 요건
- 수출국의 연방 또는 주정부가 설립한 검사기관
 - 수출국의 연방 또는 주정부가 공

인하였거나 지정한 연구 검사기관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

(나) 검사결과의 인정요건

-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검사기관이 검사하여야 함
-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검사성적서에 검사방법, 각 기준별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운송과정중 특별한 위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야 함

(6) 동일사 동일제품 인정범위

기 수입되어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재차수입시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일사 동일제품 요건

○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명칭, 주요 성분배합비율이 동일한 제품(성분배합 비율이 같되 용량: 크기가 다른 경우는 동일제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전본품등 유통판매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

○ 자연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동일국이어야 함.

(나) 검사결과 인정 유효기간

○ 신고수리일자로 부터 월일을 계산하여 그 기간을 1년으로 함.

(다) 동일제품인지의 확인

○ 기 수입검사를 받은 동일제품을 수입하고 종전의 검사결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기 수입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 수입신고한 검역소와 새로 수입신고한 검역소가 다른 경우에

도 타검역소의 검사결과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새로 수입 신고한 검역소는 이를 기 수입신고한 검역소에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동식품을 수거하여 표시기준과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 검사하여 수거·폐기등 필요 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차후 동일 제품 수입시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검사결과 확인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수입식품등의 검사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마쳐야 함이 원칙이나 검역소장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는 검사결과 확인전이라도 검사후 문제가 될 때에는 수입자가 자진폐기·전용등을 하겠다는 조건에 의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 수입된 식품등으로서 수입 검사나 유통검사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있거나 수출국등에서 유해물질의 오염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품목은 제외한다.

(가) 검사기간이 장기간(3주이상) 소요예상되는 품목, 신속하게 처리 하지 않으면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 또는 수입량이 많아 보세창고등에 오랜 시간 보관이 여의 치 않는 품목

(나) 통관후 유통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검사부적합시 사후 조치가 가능한 농축산물이나 식품원료

라. 표시사항 검사

(1) 한글표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

- 제조가공업자, 접객조리업자 그리고 소분판매업자가 재가공이나 재

포장의 대상으로서 직접 또는 주문에 의하여 수입하는 식품등(관련서류 확인을 요함)

- 낱개의 청과물등 농수산물로서 소비자가 쉽게 그 품질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제품(용기·포장에 넣어진 경우 용기·포장에는 표시기준에 의한 한글표시가 되어야 함)
○공산품관리법에 의하여 유통전 한글 표시사항이 점검 확인되는 기구·용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제품검사 후 재포장되는 식품등

(2) 한글표시 확인시 유의사항

- 한글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시 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한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은 보세증 가공하도록 조치)
○수입식품등의 한글표시도 국내제품처럼 임의로 폐거나 덧붙일수 있는 스티커등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량의 제품으로서 스티커에 의한 한글표시가 불가피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 표시는 제품의 주표시부분(육면체나 원통형의 제품의 경우 위아래부분은 제외)에 외국어로 표시된 내용을 감추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글자의 활자크기도 외국어 활자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외국어 표시가 없는 경우 6호활자 이상)
○검역소장은 한글표시 확인시 표시 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별 표2에서 규정한 표시기준사항
(유통기한 표시, 성분표시등)

*수입제품의 용기·포장에 제조자가 표시한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수입자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수입제품에 대한 표시를 모두 한글로써만 표시할 때에는 국내제품에 대한 표시규정(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2, 2. 표시사항 및 기준, 2. 품목별 공동사항중 가. 식품 및 첨가물 규정)을 따라야 하고 특히 제조업소의 소재지 표시시 국적을 포함하여야 하며, 판매업소명의 표시시에도 소재지와 함께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신고번호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3에서 규정한 허위·과대표시 여부

—업소명, 소재지, 번호등이 식품판매업 신고서 내용과 같은지 여부

마. 불합격식품등의 처리

○수입식품검사는 표본추출검사인 바관능 또는 이화학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해당식품 전체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반송 또는 폐기등의 조치지시를 하여야 한다.

이 불합격 사실은 보건사회부장관에 보고하고 각 검역소장에게도 동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보세운송등에 의하여 재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각 검역소장은 분기별 불합격식품의 반품, 용도전용, 폐기처분등의 처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불합격식품으로서 통관후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가공·가열·선별의 범위는 관세적용상 차이나 수입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아울러 물품 모두에 대한 처리결과가 쉽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바. 보 고

○각 검역소장은 매월말 수입신고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검사불합격 식품등의 내용과 이후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보건사회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경과규정

○한글표시사항 검사관계는 수입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준비케 한 후 '90. 7. 1부터 시행함.

○동일사 동일제품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입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준비케 한 후 '90. 4. 1부터 시행함.

한 방울의 물, 한 등의 전기를 아껴쓰는 마음은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별지)

제 품 명 세 서

제 품 명		H 번	S 호	K		성 상
수 출 국 (원 산 지)		제 조 회 사 (주 소)				
수 입 자		수 신	입 고	일	식 품 판 매 업 영 업 신고 번 호	
수 입 자 주 소						
주 요 성 분 (사 용 첨 가 물)						
규격과 유해물 질등의 검사결 과 등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기재 또는 사실누락등으로 식품위생법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99 년 월 일
수입자 (인)